

대전지방법원 2024. 3. 6 선고 2023가단12637 판결 [건물명도]

전 문

원 고 A

피 고 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 3. 6.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1 도면 표시 ㄱ, ㄴ, ㄷ, ㄹ, ㄺ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31㎡를 인도하고,
나. 2023. 3. 15.부터 위 가.항 기재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판사 정도영

[별지1]

부동산의 표시

대전광역시 동구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점포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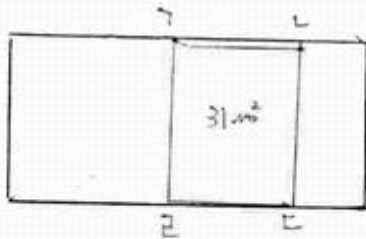
1층 점포 65.56㎡

2층 사무소 65.56㎡

3층 사무소 32.86㎡

도면 표시

1층 중 중앙부분 31㎡



[별지2]

청 구 원 인

1.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적법한 소유이며,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건물을 임차한 적법한 임차인입니다.

첨부, 부동산등기부등본, 건축물관리대장, 토지대장

2. 원고는 2019년 11월 15일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피고와 아래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2019년 11월 15일부터 2021년 11월 14일까지 24개월
임대차보증금	금10,000,000원
월임차료	금900,000원 (매월 15일 지급)
임대목적	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

첨부, 임대차계약서

3. 이와같은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이후, 피고는 매월 지급키로 한 임차료를 한두번씩 지급치 않고 있다가, 원고의 독촉이 심하면 일부만 입금하는 등의 행위를 반복해 원고가 정산하여 본 바, 2023년 3월부터 현재까지의 임차료를 지급치 않고 있어, 원고는 그간 수십차례에 걸쳐 그 지급을 전화 및 방문, 내용증명등으로 독촉하였으며, 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피고는 수시로 원고에게 “이번달안에 정리하여 명도하겠다”는 말만 계속하며 현재까지도 점유를 계속하는 등 더 이상의 자발적인 명도를 거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첨부, 내용증명(5부)

4. 이에, 원고는 피고에게 이 별지목록 기재 부분의 명도를 구하고 2023년 03월 15일부터 건물명도에 이르기까지 매월 금 900,000원의 임대료의 지급을 구하고자 이 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